

##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### 심 사 보 고

#### 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. 4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4. 17

다. 상 정 일 자 : 2001. 4. 17

( 제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 )

#### 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총무위원장 조 영 길

나. 개정사유

○ 화순군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건의된 바 있는 국가 유공자, 참전  
군·경에 대한 민원 수수료를 감면키 위함 ( 건의자 문재필 2001. 2. 27 )

다. 주요내용

○ 제7조 (수수료의 감면등)의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.

4. 국가유공자, 6.25참전 군인과 경찰, 과월 참전 군인이 군청과 식속기관 및  
읍·면사무소에 신청등록하는 제증명. 다만,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자에  
한한다.

#### 3. 질의 답변 요지 : “ 생 략 ”

#### 4. 토론요지 : “ 생 략 ”

#### 5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 ”

첨 부 :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##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4호를 다음과 신설한다.

4. 국가유공자, 6.25참전군인과 경찰, 파월참전 군인이 군청과 직속기관 및 읍.면 사무소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. 다만,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자에 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7조(수수료의 감면등) ( 생 략 )</p> <p>1. ~ 3. ( 생 략 )</p> <p>4. ( 신 설 )</p>	<p>제7조(수수료의 감면등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 현행과 같음 )</p> <p>4. 국가 유공자, 6.25참전 군인과 경찰 과월참전 군인이 군청과 직속기관 및 읍.면사무소에 신청등록하는 세증명, 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 에 한한다.</p>